

「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7년 5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,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I. 제안이유

-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II. 주요내용

-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반영하여 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고,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- 기금운용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음

(단위:천원)

기 금 명	계 획 액	기정계획액	증감
합 계(7건)	6,389,588	5,885,759	503,829
통합관리기금	362,132	362,132	0
사회복지기금	2,569,404	2,569,404	0
체육진흥기금	1,254,612	1,254,612	0
식품진흥기금	51,883	48,054	3,829
재난관리기금	1,625,157	1,625,157	0
옥외광고정비기금	26,400	26,400	0
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	500,000	0	500,000

Ⅲ. 기금개요

□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(총괄)

○ 2017년도 기금변경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획액		기 정		비교	
	계획액	구성비	계획액	구성비	증감	증감률
총 계	6,389,588	100.00%	5,885,759	100.00%	503,829	8.56%
평창군통합관리기금	362,132	5.67%	362,132	6.15%	0	0.00%
평창군사회복지기금	2,569,404	40.21%	2,569,404	43.65%	0	0.00%
평창군체육진흥기금	1,254,612	19.64%	1,254,612	21.32%	0	0.00%
평창군식품진흥기금	51,883	0.81%	48,054	0.82%	3,829	7.97%
평창군재난관리기금	1,625,157	25.43%	1,625,157	27.61%	0	0.00%
평창군옥외광고정비기금	26,400	0.41%	26,400	0.45%	0	0.00%
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	500,000	7.83%	0	0.00%	500,000	순증

○ 변경기금 조성 규모

(단위:천원)

기금명	2016년도말 조성액(a)	2017년 조성계획		2017년도말 조성액 (d)=(a)+(b)-(c)	증 감 (e)=(d)-(a)
		수입 (b)	지출 (c)		
식품진흥기금	116,110	40,773	45,508	111,375	△4,735
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	0	500,000	0	500,000	500,000

□ 기금별 운용계획

가. 평창군식품진흥기금(환경위생과)

○ 설치목적 :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

○ 기금운용계획

- ▶ 수입계획은 기정액대비 전년도이월금 3,829천원이 증액된 51,883천원이며
- ▶ 지출계획은 기정액대비 예치금 601천원과 으뜸음식점지원외 1건에 대한 도비반환금 3,228천원이 증액되어 51,883천원임.

나.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(농축산과)

- 설치목적 :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해당 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
- 기금운용계획
 - ▶ 수입계획은 전입금 500,000천원이며
 - ▶ 지출계획은 예치금 500,000천원임.

IV. 검토결과

□ 총규모 및 변경기금별 계획

-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6,389,588천원으로 기정계획금액 대비 503,82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- 변경된 기금별 내역을 살펴보면
「평창군식품진흥기금」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수입 3,829천원을 편성하여, 601천원을 예치하고, 전년도 도비보조금 3,228천원을 반환하는 것임.
「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수입 5억원을 편성하여, 5억원을 예치하는 것임.

□ 검토의견

-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맞게 작성되었으며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【관련 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